

2024년도 제1·2회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4년도 제1·2회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5일

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 105명

가. 제1회 임용시험 : 97명

※ 필기시험 과목 중 파란색 글씨는 호남권 공동출제 및 광주광역시 자체출제 과목임(비공개/문제책 회수)

시 험 명		직 렬 (직 류)	구 분	직급	선발예정 인원(명)	필기시험 과목(1·2차 병합시험)
제1회 임 용 시 험 (6.22.)	공개 경쟁 임용 시험	행 정 (일 반 행 정)	일 반	9급	17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장 애 인	9급	2	
			저 소 득 층	9급	2	
			지 방 의 회	9급	1	
		세 무 (지 방 세)	일 반	9급	4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방세법, 회계학 (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
		전 산 (전 산)	일 반	9급	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사 회 복지 (사 회 복 지)	일 반	9급	9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저 소 득 층	9급	1	
		사 서 (사 서)	일 반	9급	2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공 업 (일 반 기 계)	일 반	9급	4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장 애 인	9급	1	
		공 업 (일 반 전 기)	일 반	9급	9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장 애 인	9급	2	
		공 업 (일 반 화 공)	일 반	9급	2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시 험 명		직 렬 (직 류)	구 분	직급	선발예정 인원(명)	필기시험 과목(1·2차 병합시험)
제1회 임 용 시 험 (6.22.)	공개 경쟁 임용 시험	녹 지 (산 림 자 원)	일 반	9급	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보 건 (보 건)	일 반	9급	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식품위생 (식 품 위 생)	일 반	9급	3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간 호 (간 호)	일 반	8급	5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환 경 (일 반 환 경)	일 반	9급	3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시 설 (일 반 토 목)	일 반	9급	8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장 애 인	9급	1	
		시 설 (건 축)	일 반	9급	4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시 설 (지 적)	일 반	9급	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시설관리 (시 설 관 리)	일 반	9급	1	필수(2) : 국어, 한국사 선택(1) : 전기이론
			보 훈 청 추 천	9급	1	
		시설관리 (수 도 기 계)	일 반	9급	2	필수(3) : 국어, 한국사, 기계일반
			보 훈 청 추 천	9급	1	
		시설관리 (수 도 전 기)	보 훈 청 추 천	9급	1	필수(3) : 국어, 한국사, 전기이론
		시설관리 (수 도 화 공)	일 반	9급	1	필수(3) : 국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경력 경쟁 임용 시험	해양수산 (선 박 기 관)	일 반	9급	1	필수(3) : 물리, 선박일반, 선박기관
		의료기술 (의 료 기 술)	방 사 선	9급	1	필수(3) :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임 상 병 리	9급	1	
		운 전 (운 전)	일 반	9급	2	필수(2) :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지 방 의 회	9급	1	

나. 제2회 임용시험 : 8명

※ 필기시험 과목 중 **파란색 글씨**는 호남권 **공동출제** 및 광주광역시 **자체출제** 과목임(비공개/문제책 회수)

시험명		직렬 (직류)	구분	직급	선발예정 인원(명)	필기시험 과목(1·2차 병합시험)
제2회 임용 시험 (11. 2)	공개 경쟁 임용 시험	행정 (일반행정)	일반	7급	2	필수(6) : 국어(한문 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경력 경쟁 임용 시험	학예연구 (학예일반)	일반	연구사	1	필수(2) : 문화사, 한국문화사 선택(1) : 한국미술사
		기록연구 (기록관리)	일반	연구사	1	필수(5) : 기록관리학개론(전자기록물관리 포함), 기록물분류·평가(기술포함), 전자기록물관리, 기록보존학, 행정법총론 선택(1) : 행정학
		수의 (수의)	일반	7급	2	필수(2)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선택(1) : 수의전염병학
		공업 (일반전기)	기술 계 출 고	9급	1	필수(3) :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시설 (일반토목)		9급	1	필수(3) : 물리, 토목일반, 측량

※ 기술계 고졸 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 과목 중 ‘물리’는 물리학 I에서 출제되며, ‘측량’은 2009년 교육과정의 ‘측량’교과를 포함하여 출제됨

※ 지방의회 구분모집 합격자의 근무예정기관은 광주광역시의회이며, 그 외 합격자의 근무예정기관은 광주광역시(본청, 사업소) 및 5개 자치구임

- 다만, **시설관리직렬 중 수도기계·수도전기·수도화공직류** 합격자의 근무예정기관은 **상수도사업본부임**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 100점 만점, 4지 택1형 20문항)

※ **서류전형**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서면으로 심사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제1·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3

필기시험시간 및 합격자 결정방법

가. 필기시험시간

시 험 명		직 급 (구 분)	직 렬	시험과목	시험시간
제1회 임용시험	공개경쟁	8급, 9급		5과목	10:00 ~ 11:40(100분)
		9급	시설관리	3과목	10:00 ~ 11:00(60분)
	경력경쟁	9급	해양수산, 의료기술		
			운 전	2과목	10:00 ~ 10:40(40분)
제2회 임용시험	공개경쟁	7급	행 정	5과목	10:00 ~ 11:40(100분)
	경력경쟁	연구사	기록연구	6과목	10:00 ~ 12:00(120분)
			학예연구	3과목	10:00 ~ 11:00(60분)
		7급	수 의		
		9급(기술계 고졸)	공업, 시설		

나. 합격자 결정방법

시 험 명	결 정 방 법
공개경쟁임용시험	각 과목에서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총득점이 높은 순
경력경쟁임용시험	각 과목에서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총득점이 높은 순

※ 구체적인 합격자 결정방법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 참고

4

응시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 등 (기준일 :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합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②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 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나. 거주지 제한 (다음 ①과 ②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응시 가능)

※ 기술계 고졸 구분모집의 경우 광주광역시 내에 소재한 학교 졸업(예정)자는 거주지 제한을 적용받지 않음

- ①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 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동일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② **2024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은 제외함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군·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다. 성 별 : 제한 없음

라. 응시연령 : 18세 이상 (2006. 12. 31. 이전 출생자)

※ 기술계 고졸 구분모집 경력경쟁임용시험은 2025년 2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 예정자에 한하여 조기 입학한 17세(2007. 12. 31. 이전 출생자)도 응시 가능함

마. 응시자격요건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해야 함)

(1) 제1회 임용시험

구 분	직 급	직 렬	직 류 (구 분)	응시자격요건
공 개 경 쟁 임 용	8급	간 호	간 호	조산사, 간호사
	9급	사회복지	사 회 복 지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사 서	사 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시 설 지	적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사(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경 력 경 쟁 임 용	9급	해양수산	선 박 기 관	기관사 6급 이상
		의료기술	의 료 방 사 선	방사선사
			기 술 임상병리	임상병리사
		운 전	운 전	‘1종 대형운전면허’ 취득 후 대형버스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사람

(2) 제2회 임용시험

구 분	직 급	직 렬	직 류	응시자격요건
경 력 경 쟁 임 용		학예연구	학예일반	역사학, 역사교육학, 고고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서지학, 미술학(미술사 포함), 공연예술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기록연구	기록관리	▶ 아래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기록관리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3.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2011.5.23. 이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이수 중인 사람으로서 최종(면접)시험 시행예정일 까지 이수한 사람
	7급	수 의	수 의	수의사
	9급 (기술계 고졸)	공 업	일반전기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관련학과 졸업(예정)자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시 설	일반토목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관련학과 졸업(예정)자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연구사 응시자격 요건 중 “전공한 사람”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포함)으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 대학에서 비전공자라도 대학원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 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면 응시 가능함

- 연구사의 경우 『**붙임 1**』 관련분야 학위 증명 및 학교장 추천서』를 소속 학교장(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급받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에 한함

- 9급 기술계 고졸 구분모집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광주광역시 외 소재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2025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중 광주광역시 거주지 제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도 응시 가능합니다.

※ 기술계고 졸업자는 졸업일과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사람만 응시 가능

바. 장애인 구분모집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이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결정되어 있어야 하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장애인 편의지원을 원하는 수험생은 『**붙임 2**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를 참고하여 반드시 원서접수 시 신청하여 주시고, 구비서류 제출 대상자는 아래의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제1회 임용시험 : 2024. 3. 25.(월) ~ 4. 1.(월)

- 제2회 임용시험 : 2024. 7. 22.(월) ~ 7. 29.(월)

※ 호남권 공동출제 및 광주광역시 자체출제 과목에 대해서는 일부 편의지원(점자문제지, 음성지원 등)이 제한됨

사. 저소득층 구분모집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 해당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 ※ 단, 자격이 혼합된 경우에도 합산한 기간이 (중간공백 없이) 연속하여 2년 이상이면 응시 가능
-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지원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지원대상자)에 해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보호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합니다.
 -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지원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지원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 [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수급(지원대상)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일반모집 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지원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51조 규정에 따라 **광주지방보훈청에서 추천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응시희망자는 **광주지방보훈청으로 사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광주지방보훈청에서 추천한 응시자라도 별도로 **해당 시험의 원서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자. 운전직렬 응시대상자

- '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대형버스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만 응시 가능합니다.(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
- 대형버스 규격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대형 승합자동차 기준에 따릅니다.
 -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차량의 길이·너비·높이가 모두 소형(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 자동차등록증상의 차종에 '대형승합' 이라고 기재된 차량만 해당(덤프트럭, 화물차, 렉카, 트레일러 제외)
- 군(軍) 복무기간 중 대형버스 운전경력은 1종 대형운전면허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되며, 군(軍) 면허만 취득한 상태에서의 운전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아래의 제출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3】 운전직(9급) 자격요건 및 대형버스 운전경력 증명서 참고)

< 경력증명서 제출서류 >

- 가. 1종 대형운전면허증 사본 1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운전경력증명서(경찰청 발급) 1부
 - 나. 대형버스 운전경력 증명서 1부(사업자등록이 된 업체 발급 대형버스 1년 이상 운전경력)
 - 【붙임 3】 서식(대형버스 운전경력 증명서)으로 제출해야 하며 사업체에서 발행한 자체서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붙임서식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도록 발급받아야 함
 - 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에서 발급 가능
 - 경력증명서상의 기간이 포함되도록 발급
- ※ 제출한 서류만으로 경력인정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서류 전형틀 통해 경력의 적격 여부를 심사할 예정임

차. 기술계 고졸(예정)자 구분모집 (다음 ①과 ②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응시 가능)

- ① 광주광역시 내 소재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로서 출신(재학)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 ② 광주광역시 외 소재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중 광주광역시 거주지 제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출신(재학)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 ※ 기술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각급 대학의 중퇴자도 포함하되, 해당 여부는 당해 시험의 추천서 접수기간 마감일(2024. 7. 5.(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추천 학교장은 추천대상자의 생활 기록부에 대학진학이 기재된 경우 중퇴를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후 추천함

【 학교장 추천대상자 자격기준 】

- (학과기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별표 9]의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로서, 선발예정직렬별 해당 학과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9호) [별표 2]의 ‘직무분야별 학과’의 학과 명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도 포함할 수 있음
- (성적기준) ①전문교과 성취도가 평균 B등급 이상이고, ②그 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③보통교과의 평균 석차비율이 50% 이내이거나 평균 석차등급이 4.5 이내인 사람 ⇨ ①+②+③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졸업자는 고등학교 소학년 성적, 졸업예정자는 고등학교 1~2학년 성적 기준
 - 고등학교 재학 중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로 전학한 경우, 재학생은 2학년, 졸업생은 3학년 관련학과 성적 산출이 가능해야 하고, 인문계고 재학당시 보통교과도 학과 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함
- ※ (선발예정직렬(류) 관련 전문교과 이수) 전문교과 총 이수단위 중 관련 전문교과 이수단위 비율 50%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2026년부터 적용
 - 선발예정직렬(류) 관련 전문교과 이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선발예정직렬(류)과 관련된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별표 7의4]의 자격증을 취득하여 해당 직렬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격증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

【 점수계산 방법 】

① <전문교과 : 성취도 평균 B 이상 산출방법>

성취도 평균 B 이상 산출값 = $\sum(\text{전문교과 이수과목 성취도 환산점수}) \div \text{총 이수과목} \geq 0$
 성취도 환산점수 : A=1점, B=0점, C=-1점, D=-2점, E=-3점

② <전문교과 : 성취도 A 비율 산출방법>

성취도 A 비율(%) = $(\text{성취도 A 이수과목 수} \div \text{총 이수과목 수}) \times 100$

③ <보통교과 : 평균석차등급 산출방법>

평균 석차등급 = $[\sum(\text{과목별 단위수} \times \text{과목별 등급})] \div \sum \text{과목별 단위수}$

※ 석차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과목은 제외

※ 성취평가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아래 기준 적용

-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취득한 사람으로서 소학년 석차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50% 이내인 졸업(예정)자

* 학교장 추천대상자에게 성취평가제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또는 자치단체에서 학과성적 기준으로 성취평가제 적용을 유예한 경우

- 응시희망자는 『【붙임 4】 기술계 고졸(예정) 구분모집 절차 및 방법 안내』에 따라 2024. 6. 7.(금)까지 해당 학교로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학교에서는 학교장 추천서 등 관련 서류를 2024. 7. 1.(월) ~ 7. 5.(금)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학교장 추천과 별도로 해당 시험의 원서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인터넷으로 응시 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등 관계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공직임용 취소와 함께 해당 학교는 향후 3년간 추천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5 시험문제 출제방법 및 공개여부

가. 인사혁신처에 위탁출제하는 아래 시험과목의 문제는 공개하며, 응시자는 시험종료 후 문제책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① 제1회 임용시험

직 급	과목수	대 상 과 목
8·9급	32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사회복지학개론,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기이론, 전기기기,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조림, 임업경영, 공중보건, 보건행정,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화학, 환경공학개론,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계획, 건축구조,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② 제2회 임용시험

직 급	과목수	대 상 과 목
7급	7과목	국어(한문 포함),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9급 (기술계 고졸)	5과목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토목일반, 측량

나. 호남권(광주·전남·전북) 공동출제 및 자체출제하는 아래 시험과목의 문제는 비공개하며, 응시자는 시험종료 후 문제책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① 제1회 임용시험

구 분	직 급	과목수	대 상 과 목
공동출제	9급	2과목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자체출제	9급	13과목	국어, 한국사, 전기이론, 기계일반, 화학공학일반, 물리, 선박일반, 선박기관,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② 제2회 임용시험

구 분	직 급	과목수	대 상 과 목
공동출제	연구사	2과목	문화사, 한국문화사
자체출제	연구사, 7급	10과목	한국미술사, 기록관리학개론(전자기록물관리 포함), 기록물분류평가(기술포함), 전자기록물관리, 기록보존학, 행정법총론, 행정학,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6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응시원서 접수기간	최소기간 [추가 최소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 험 일	합격자 발표일
제1회 임용시험	3. 25.(월) ~ 3. 29.(금)	3. 25.(월) ~ 4. 1.(월) [5. 20.(월) ~ 5. 22.(수)]	필기시험	5. 31.(금)	6. 22.(토)	7. 17.(수)
			면접시험	7. 17.(수)	8. 7.(수) ~ 8. 9.(금)	8. 23.(금)
제2회 임용시험	7. 22.(월) ~ 7. 26.(금)	7. 22.(월) ~ 7. 29.(월) [9. 30.(월) ~ 10. 2.(수)]	필기시험	10. 11.(금)	11. 2.(토)	11. 27.(수)
			면접시험	11. 27.(수)	12. 12.(목)	12. 20.(금)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으며, 시험 단계별 합격자 및 서류전형,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gwangju.go.kr>) 「시정소식-시험인사정보」에 별도 공고할 예정임
(문자메시지 등 개별 통보서비스 미제공)

※ 필기시험 성적 열람의 경우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에 각각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에서 본인의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음 (전화 확인은 불가함)

가. 접수방법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를 통하여만 접수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와 관련된 문의 : 인터넷원서접수센터(☎ 1522-0660)

나.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 09:00부터 마감일 18:00까지입니다.(마감일을 제외한 접수 기간 내에는 24시간 접수 가능) ※ 접수 취소시간도 동일

다. 응시수수료 등

- 응시수수료 : 7급·연구사 - 7천원 / 8·9급 - 5천원
- 응시원서 접수 당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에 대한 응시수수료 면제(반환)는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개정 이후 시행 예정으로 반환방법 등 세부사항은 원서접수 시 안내사항 참고
- 다음의 경우에는 응시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 응시원서 접수 취소기간(추가 기간 포함) 내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
-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등)이 소요되며 이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라. 사진등록

-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규격은 3.5cm×4.5cm(해상도는 100dpi 이상),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특히 모자 또는 선글라스 착용, 배경사진, 측면사진 등은 불가)
- 응시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가급적 원판보유 사진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다. 원서접수 유의사항

- 원서접수 기간 내 기재사항의 수정은 가능하지만, 응시직렬(직류/구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부터 출력이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 센터(<https://local.gosi.go.kr>)에서 본인이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하여야 합니다.
- **동일 날짜에 전국 동시 시행하는 지방공무원 공개경쟁·경력경쟁 임용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기관의 1개 시험에만 접수 가능하며,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접수 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격 제한,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등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라며, 누락·착오 입력 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 기술계 고졸(예정) 구분모집 분야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관련학과 졸업(예정)자로 학교장(교육감)이 추천한 사람만이 원서접수할 수 있으며, 학교장 추천은 해당 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영어, 한국사 시험과목 대체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한함)

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제출

-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시 험 의 종 류	기 준 점 수	
	일 반	청 각 장 애
토플(TOEFL)	PBT 530점 이상	PBT 352점 이상
	IBT 71점 이상	-
토익(TOEIC)	700점 이상	350점 이상
텡스(TEPS)	340점 이상	204점 이상
지텔프(G-TELP)	Level 2의 65점 이상	-
플렉스(FLEX)	625점 이상	375점 이상

* 2019. 1. 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됨

* 2019. 1. 1.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는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됨

○ 성적제출 방법

- 응시자는 사전등록 시 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응시원서 접수 시까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등록기간[2024. 7. 22.(월) ~ 11. 1.(금)] 내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를 통해 등록해야 합니다.

○ 사전등록 안내

-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능력검정시험 중 자체 유효기간이 2년(토익, 토플, 텡스, 지텔프)인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에 시험성적을 사전등록해야 하며, 사전등록한 능력검정시험 성적은 원서접수 시에도 등록하여야 합니다.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며, 사전등록 후 원서접수 화면에서 사전등록 성적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시험 미제출로 간주됨

- 등록대상시험 : 토익(TOEIC), 토플(TOEFL), 텡스(TEPS), 지텔프(G-TELP)

※ 플렉스(FLEX)의 경우 성적유효기간이 경과되어도 조회 가능하므로 사전등록 대상이 아님

* 토익, 텡스, 지텔프 : 자체 성적유효기간 내 상시 등록 가능

* 토플 : 자체 성적유효기간 내 매월 1일~10일 등록

○ 인사혁신처 사전등록 성적 연계 안내

-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를 위하여 사이버국가고시센터(인사혁신처)에 사전등록된 유효한 영어성적이 있는 응시자의 경우, 인사혁신처 연계신청을 통해 성적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영어능력검정시험 청각장애 인정범위 안내

- 해당 시험의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으며, ① ‘양쪽 귀 청력 손실이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급)’ 이거나 ② ‘양쪽 귀 청력 손실 60dB이상이고 어음(말소리) 분별력 50% 이하’ (진단서 제출)인 사람에 해당합니다.
- 제출서류 : 의사진단서(해당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발급한 진단서, 의사소견서는 불인정)

- * 진단서는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시기 등 청력 상태를 검진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발급해야 함
- * 진단서에 반드시 포함될 내용 : 면제대상 판단기준 검사방법, 장애정도 및 유형 등에 대한 구체적 진술, 듣기점수 제출 제외 해당 여부 - 아래 예시표 참조

〈 전문의 진단서 발급 내용 예시 〉

상기인은

- ① 보건복지부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청력 손실과 어음(말소리) 분별력을 검사한 결과,
- ② 양쪽 귀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며, 어음(말소리)분별력이 30%인 사람으로서
- ③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영어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제외 대상 기준에 해당합니다.

- 신청방법 : 해당 시험 원서접수 시 듣기점수 적용 제외 대상임을 표시하고, 진단서 등 관련 증빙서류는 원서접수 취소기간(추가 취소기간 미포함) 마감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등기)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우 61945) 광주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 인사정책관 인재채용팀)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청각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舊2·3급)으로 등록한 응시자는 진단서 제출 불필요
- * 듣기점수 적용 제외 대상으로 신청한 시험에 한하며, 최초 1회 제출하면 매 원서접수 시 듣기점수 적용 제외 대상임을 표기하되, 진단서는 유효 기간 내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제출 불필요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제출

- 기준점수(등급)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입니다.
 - *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됨
 - * 국사편찬위원회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며,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음
- 응시원서 접수 시 인증번호를 조회하여 성적을 등록해야 하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은 영어능력검정시험과 달리 자체 유효기간이 없으므로 사전등록이 불필요합니다.
 - * 필요 시 진위확인을 위해 성적표 원본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응시원서 접수 시까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등록기간[2024. 7. 22.(월) ~ 11. 1.(금)] 내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를 통해 등록해야 합니다.

9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한함)

가. 대상시험 : 직급·직렬(직류/구분)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

※ 선발예정인원이 5명 미만인 공개경쟁임용시험, 경력경쟁임용시험에는 적용되지 않음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예정인원의 30%

- 인원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선발합니다. [하한성적 : (합격선 - 3점) * 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3점을 곱한 점수]

※ 임용목표 인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10

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합격제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한함)

가. 대 상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나. 적용방법

- 필기시험(제1·2차)에서 일반모집 동일 직렬·직류·구분 시험단위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모두 합격처리할 수 있습니다.

11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 가산점적용 대상자 및 가산비율

구 분	가 산 비 율	비 고
취업지원 대상자 (선발예정인원 4명 이상시 적용)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취업지원 대상자와 의사상자 등 대상자에 모두 해당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선택 · 취업지원(또는 의사상자 등) 대상자 가산점과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각각 적용 · 가산 특전은 각 과목에서 만점의 40% 이상 득점 시 적용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마」 참고
의사상자 등 대상자 (선발예정인원 10명 이상시 적용)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자격증 소지자 (직렬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공통적용 가산점은 2021년부터 폐지

나. 취업지원 대상자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의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에서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을 가산합니다.
- 가산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직렬(직류/구분)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

※ 본인의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서 직접 확인해야 함(보훈상담센터 ☎1577-0606)

다. 의사상자 등 대상자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 한함)

-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에 따른 의사상자 등 대상자의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에서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3% 또는 5%)을 가산합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6조에 따라 의사상자 등 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

※ 의사상자 등 해당 여부와 가산비율은 보건복지부(☎044-202-3255) 등에 사전 확인해야 함

라. 자격증 소지자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직군(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 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에서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붙임 5】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일람표 참조)

- 행정직군 및 보건직렬

직 렬(직 류)	대 상 자 격 증	가산비율
행 정(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	5%
세 무(지 방 세)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사회복지(사회복지)	변호사	
보 건(보 건)	임상심리사 1·2급	

- 기술직군 및 연구직(해당 분야의 자격·면허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류는 제외)

구 분	7급, 연구사		8·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 직렬(직류)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별표 7의4]에 의하고,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 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 대상 자격으로 인정됨

마.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취업지원 대상자(또는 의사상자 등 대상자) 가산점과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각각 하나씩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직군(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인정되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가산점이 적용됩니다.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모든 응시자는 해당요건을 갖추어 **해당 필기시험 시행예정일을 포함하여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에 자격증(가산점)의 종류 및 자격번호(보훈번호 또는 증서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필기시험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음)
 - 제1회 임용시험 가산점 등록기간 : 6. 22.(토) ~ 6. 24.(월)
 - 제2회 임용시험 가산점 등록기간 : 11. 2.(토) ~ 11. 4.(월)
- ※ 자격증(가산점) 종류, 자격번호, 보훈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13

달라지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제도

2024년부터 변경사항

-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 전산직렬의 경우 **자격증 없이도 공채시험에 응시 가능**하며, 만일 **자격증이 있다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대상 자격증(신설)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전 산	전 산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데이터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 처리, 정보보안 기능사 :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 **가산자격증 등록기간**이 ‘원서접수일부터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일까지’에서 ‘**해당 필기시험 시행예정일을 포함하여 3일 이내**’로 변경됩니다.
- 필기시험 장고 공고일 전 일정기간 동안 **응시원서 접수 추가취소**가 가능(응시수수료 전액 환불)하며,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에 대한 응시수수료 면제(반환)는 관련 규칙 개정 후 시행 예정

2025년부터 변경사항

- 지적직류 공개경쟁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범위가 변경됩니다.

직 류	직 급	기 존	변 경
지 적	5급 이상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6·7급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8·9급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사(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 녹지직렬(산림자원·산림보호·조경직류)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에 ‘나무의사’가 추가됩니다.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을 적용하며, 산림이용직류는 가산에서 제외
- 8·9급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의 국어·영어 과목 출제기조가 지식암기 위주에서 현장 직무 중심으로 전환됩니다.
-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시정소식-시험인사정보-우리시공무원) 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시험 공고 게시물 참조

2026년부터 변경사항

- 기술계 고졸(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전문교과 이수요건이 적용됩니다.
- 선발예정직렬(류) 관련 전문교과 총 이수단위 중 관련 전문교과 이수단위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함
 - 전문교과 이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선발예정직렬(류)과 관련된 「광주광역시 지방 공무원 인사규칙」 [별표 7의4]의 자격증을 취득하여 해당 직렬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격증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

- 가.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효한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중 1개), 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전(09:20)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나. 응시자는 응시표 및 답안지 작성요령,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 중복지원, 거주지 제한 미확인,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라.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스마트워치, PMP, MP3,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및 전자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마.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펜을 사용하지 않거나, 예비표기를 한 경우는 해당 문항이 0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바.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의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 필기시험 응시자는 해당 시험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유효한 법령, 고시, 판례 등을 기준으로 필기시험 문제의 정답을 구해야 합니다. 다만, 개별과목 또는 문항에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합니다.
- (예시) 필기시험 시험일이 2024. 6. 22.인 경우 : 2024. 4. 30. 현재 유효한 법령 등 기준
- 아. 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등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 부정행위자 등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시험과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차. 「지방공무원법」 제43조의3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카.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 및 관계법령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gwangju.go.kr>)에 공고합니다.

파. 기타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광주광역시 인사정책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인사정책관 인재채용팀 ☎ 062-613-6281~5)

본 공고문의 내용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gwangju.go.kr>) 및 모바일 광주 앱을 통해서도 열람 할 수 있습니다.

[PC :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 시정소식 → 시험인사정보 → 우리시공무원]

[모바일 :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또는 iOS 앱스토어에서 '모바일광주' 검색 후 설치]

- 붙임 1. 관련분야 학위 증명 및 학교장 추천서(서식) 1부.
2.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 1부.
3. 운전직(9급) 자격요건 및 대형버스 운전경력 증명서(서식) 1부.
4. 기술계 고졸(예정) 구분모집 절차 및 방법 안내 1부.
5.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일람표 1부. 끝.